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장

제15호 2016. 4. 01(금)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 2016-49 호 지적측량기준점 고시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460 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3
- 남원시 공고 제 2016-442 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
- 남원시 공고 제 2016-461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

회 람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고시 제 2016 - 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가. 고시점수: 총 16점 (지적도근점 설치)
- 나. 고시내용: 별첨
- 다. 성과보관장소: 지적서고

2016. 4. 1.

남 원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내역

일련 번호	구 분	기준점명 및 점번 호	좌 표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성과보관 장 소	비 고
			지역좌표					
			세계측지좌표					
X	Y							
1	도근점	11041	222858.76	253619.46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90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166.517	253692.594				
2	도근점	11042	222914.46	253615.10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30-1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22.221	253688.237				
3	도근점	11043	222898.46	253717.64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90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06.231	253790.767				
4	도근점	11044	222918.59	253862.24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29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26.357	253935.366				
5	도근점	11045	222896.70	253895.41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29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04.468	253968.541				
6	도근점	11046	222885.95	253964.67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29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193.722	254037.802				
7	도근점	11047	222874.30	254002.61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90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182.072	254075.743				
8	도근점	11048	222966.14	254173.19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90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73.913	254246.319				
9	도근점	11049	222973.33	254267.59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439-4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81.117	254340.714				
10	도근점	11050	222870.42	254387.67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365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178.204	254460.794				
11	도근점	11057	225601.07	241510.38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산89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25908.564	241583.519				
12	도근점	11058	225718.87	241714.41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산89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26026.373	241787.537				
13	도근점	11059	225742.15	241804.77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산89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26049.654	241877.894				
14	도근점	11060	216767.20	242882.93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102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17074.788	242956.224				
15	도근점	11061	216756.42	243023.95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102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17064.007	243097.241				
16	도근점	11062	216662.13	243068.52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68-3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16969.719	243141.819				

남원시 공고 제2016 - 460호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된 풍산누리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청 도시과(☎ 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6년 4월 1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풍산누리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원시 월락동 9번지 일원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위치	등급	류별	번호	사업구간	사업량(m)	비고
남원시 월락동	계				L=270m, B=6~12m	
	중로	3	30	월락동 13-2 ~ 월락동 152-2	L=136m, B=12m(개설)	
	중로	3	29	월락동 131-6 ~ 월락동 157-9	L=26m, B=12m(개설)	
	소로	3	148	월락동 29-3 ~ 월락동 180도	L=108m, B=6m (아스콘덧씌우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 풍산건설, 대표 안장용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58

5. 사업기간 : 2015. 12. 20 ~ 2016. 3. 31

6. 관련도서 : 실음생략. 끝.

남원시공고 제2016 - 442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예술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대관허가에 대한 제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예술회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용허가 및 신청 조항변경(안 제2조)
- 사용시간 계산의 시작 및 종료시점 명시 추가(안 제4조제4항)
- 휴관 및 휴무 조항 추가 (안 제5조)
- 허가 제한조항 추가 (안 제6조3호,4호,5호)
- 허가 취소조항 추가 (안 제7조 5호)
- 사용료 감면 조건 중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조항 삭제 (안 제8조제1항 6호)
- 사용료 반환조항 변경(안 제10조 2호,3호,4호)
-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조항 삭제(안 제14조)
- 사용료 변경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95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43 춘향문화 예술회관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89) 및 직접방문 등가. 관계법령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시설사업소(☎063-620-5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남원시 춘향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 에”를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 람은 사용 10일 전에”로, “표시한 신청서에 의하여”를 “신청서에 적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자”를 “사용 자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회관의 일부를”을 “예술회관에서”로, “다음 각 호 와 같다”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조제2항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 지서식 납입고지서에 의하여”를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로”로 하며, 같은 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 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휴관 및 휴무) ① 예술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2.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한 사람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용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는”을 “해당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품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4. 제7조제3호, 제5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 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예술회관의 관리 및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7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체납할 때”를 “체납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경우는”을 “해당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 행사

제8조 제1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9조 중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를 “경우 : 전부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중지된 경우 : 전부 반환

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취소하고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

4.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제11조 제1항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전대하지”를 “다시 빌려주지”로 한다.

제13조 중 “또는 과실로 인하여”를 “또는 과실로”로,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

당한”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해”를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질환”을 “질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을 “그 밖에 공연장 안전유지상 입장제한이”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제4조제1항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대공연장	오전	1 회	10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2.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오후	1 회	120,000	
	야간	1 회	150,000	
소공연장 소회의실	오전	1 회	40,000	
	오후	1 회	60,000	
	야간	1 회	80,000	
전 시 실		1 일	3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30분 미만 사용시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초과 사용시 : 다음회 사용료 전액(야간은 당해 사용료)

2. 부대시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악 기	피 아 노	1회	30,000	사용자 조율
영상시설	빔 프로젝트	1회	20,000	
조 명	기 본 조 명	1회	50,000	무대조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행사(세미나, 강연회 등)
	무 대 조 명	1회	150,000	무대조명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행사(연극, 무용, 발표회 등)
효과조명	핀 라 이 트	1회	10,000	
	드라이아이스	1회	20,000	재료는 사용자 준비
	포 그 머 신	1회	10,000	
난 방	대 공 연 장	1회	시간당 시가	사용시간과 연료시가에 의함.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
	소 공 연 장 소 회 의 실	1회	"	"
	전 시 실	1회	"	"
냉 방	대 공 연 장	1회	"	"
	소 공 연 장 소 회 의 실	1회	"	"
	전 시 실	1회	"	"
음 향	음 향 기 본	1회	30,000	
	유선 마이크	1대/1회	10,000	
	무선핸드마이크	1대/1회	10,000	
	무선핀마이크	1대/1회	10,000	
무대기계	장 치 봉	1대/1회	10,000	
	음향 반사판	1회	50,000	
	오케스트라리프트	1회	30,000	

- 예행연습을 위한 부대시설 사용 : 사용료 전액 부과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30분 미만 사용시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초과 사용시 : 당해 사용료 전액
- 냉방(6월~8월), 난방(12월~2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온 급변에 따라 예외로 할수 있다.)
 - 냉·난방비 산출기초
 - 냉·난방기 시간당 소비량× 연료시가(ℓ 당)×사용시간 = 사용요금
 - ※ 시가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하며 관내주유소 3개소 이상 평균가격을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 발전 및 시민문화 예술의 향상을 위한 <u>남원시춘향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u>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u>----- ----- ----- -----.</p>
<p>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u>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한 신청서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u></p>	<p>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u>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10일 전에 -- 신청서에 적어 -----</u> ----- . <u><단서 삭제></u></p>
<p>1. <u>사용자</u>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p> <p>2. ~ 5. (생략)</p>	<p>1. <u>사용자의</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사용의 범위) <u>예술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제3조(사용의 범위) <u>예술회관에서</u> ----- ----- <u>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u></p>
<p>1. <u>기본시설</u></p> <p>2. <u>부대시설</u></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생략)</p>	<p>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현</p>

략)

②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료는 별지서식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허가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1.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

행과 같음)

② ----- 사용기간 중 -----.

③ -----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로 -----.

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제5조(휴관 및 휴무) ① 예술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 2.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한 사람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용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허가제한) ----- 해당할 경우에는 -----.

- 1. -----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2. -----

려가 있을 때

3. 기타 예술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
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할 때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
능할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 4. 조례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

---- 있을 경우

- 3. 상품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
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 4. 제7조제3호, 제5호에 따른 사
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5.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
별한 사유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 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
- 6. 그 밖에 예술회관의 관리 및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

- 각 호의 -----
경우에는 -----
-----.

- 1. 이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위
반된 경우
- 2. ----- 그 밖에 -----
----- 불
가능한 경우
- 3. -----
----- 체납한
경우
-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제8조(사용료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
2.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
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4. 5. (생략)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가. 시가 후원 및 협찬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료 감면) ①-----
 ----- 해당될 경우에는
 는 -----
 -----.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 행사
 2. -----
 ----- 그 밖에 -----
 3. -----
 ----- 따른 -----
 4. 5. (현행과 같음)
- <삭 제>

② --- 각 호의 -----

 -----.

1. -----
 - 가. -----

 -- 그 밖에 -----

나. (생략)

2. (생략)

제9조(사용료 감면절차) 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
을 취소한 경우

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
을 취소한 경우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감면절차) -----
----- 감면 받으려는 사
람은 -----
-----.

제10조(사용료 반환) -----
-----.

----- 경우에는 -----
-----.

1. -----
----- 경
우 : 전부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이 취소·중지된 경우 : 전부
반환

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취
소하고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 전
부 반환

4.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
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
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예술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장권의 판매 및 수표관리를 예술회관이 담당하되 예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사용기간 중 -----
----- 경우에는 -----
----- 받아 -----
-----.

② 제1항에 따라 -----

-----.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
----- 사람은 -----

----- 다시 빌려주지 -----.

제13조(손해배상) -----
또는 과실로 -----
----- 잃어버렸
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
-----.

제14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삭 제>

<삭 제>

<삭 제>

수료는 예매금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15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전염병 질환 및 만취자
- 3. (생략)
- 4.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입장제한) -----
----- 사
람에게는 -----
-----.

- 1. (현행과 같음)
- 2. ----- 질환자 -----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공연장 안전유지상 입장제한이 ----- 사람

제16조(시행규칙) ----- 시
행에 -----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조례 일부개정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16-461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의 정비 등을 통하여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조례위임사항에 대하여 조항정비(안 제13조 개정)
-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기준에 대하여 퍼센트(%)기준에서 도(°) 기준으로 정비·완화하고 임야에서의 경사도 조사방법이 산지관리법 상 조사방법과 상이하여 조항 정비(안 제20조제1항제2호, 제3호)
- 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안 제21조 제1호)
- 라. 개발진흥지구지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조례위

임사항 정비(안 제51조제2항 신설)

마. 생산녹지 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축에 대한 건폐율 완화(20%→ 60%)

조항 정비(안 제57조제6항제3호 신설)

바. 규제개선 및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정기심의(월1회) 및 안건처리 기한설정(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안 제69조제6항제7항 신설)

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 등의 범위 확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 → 모든 식품공장) (별표16제2항아호)

아. 계획관리 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 조례 위임사항 정비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별표20제2항나호)

자. 자연 취락지구 내 요양병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조항 정비(별표23제2항바호)

차.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용도지역 별(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야영장 시설입지에 대하여 조항 정비(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13, 별표15, 별표18, 별표19, 별표21, 별표23 개정)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구체적인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하고,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를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목 중 “25퍼센트”를 “15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5퍼센트”를 “20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임야의 경우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제20조 제1항 중 “제2종”을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 지역 :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 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7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⑦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4,5,6,13,15,16,18,19,20,21,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제3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같은 표 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पी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7.1, 2009.11.24., 2011.11.18., 2014.6.27., 2015. 3. 31.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수에 따른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수에 따른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 7. 1, 2009.11.24., 2014.6.27., 2015. 3.31.>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진소 및 고압가스충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개정 2008. 7. 1, 2009.11.24., 2014.6.27.>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2015. 3.31.>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 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

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개정 2008. 7. 1, 2009.11.24., 2014.6.2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삭제<2008. 7. 1>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 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단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9.11.24>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2015. 3.3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삭제<2015.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0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별표 21】 <개정 2008.7.1., 2014.6.27.>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